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녹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4,694톤에서 23,194톤으로 늘리는 등 1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023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2023년 시장접근물량		
		현행 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쪄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14,694톤	8,500	23,194톤
0713	3 콩[비그나(<i>Vigna</i>)속·파세러스(<i>Phaseolus</i>)속]			
0713	31 녹두[비그나 멥고(엘) 헤퍼(<i>Vigna mungo (L) Hepper</i>)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i>Vigna radiata (L) Wilczek</i>)종]			
0713	31 1000 종자용			
0713	31 9000 기타			
0713	32 팥[아주기(<i>Adzuki</i>)] [파세러스(<i>Phaseolus</i>)·비그나 앵구라리스(<i>Vigna angularis</i>)]			
0713	32 1000 종자용			
0713	32 9000 기타			

1003			보리		30,000톤	18,000톤	48,000톤
1003	10		종자				
1003	10	1000	맥주보리				
1003	90		기타				
1003	90	1000	맥주보리				
1005			옥수수		13,150,000	111,800톤	13,261,800
1005	90		기타		톤*		톤
1005	90	1000	사료용				
1005	90	2000	팝콘용				
1005	90	9000	기타				
1103			곡물의 부순 알곡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1103	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	13	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 거칠게 뿜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잘게 부순 것			
1104	2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 거칠게 빵은 것)			
1104	23	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2		옥수수로 만든 것			
1108	12	1000	식품용			
1108	12	9000	기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2	90	20	그 밖의 채소			
0712	90	209	기타			
0712	90	2092	스위트콘(기타)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10톤	1,500톤	1,510톤
1105	10	000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1105	20	000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	10	0000	볶지 않은 것	40,000톤	103,000톤	143,000톤
1107	20		볶은 것			
1107	20	1000	훈연(燻煙)한 것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227.4톤	3,072.6톤	3,300톤
1108	11	0000	밀로 만든 것			
1108	19		그 밖의 전분			
1108	19	9000	기타			
1108	20	0000	이눌린(inulin)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2,400톤	34,000톤	36,400톤
1108	14		매니옥(manioc)[카사바]			

			(cassava)]으로 만든 것			
1108	14	1000	식품용			
1108	14	9000	기타			
1108	19		그 밖의 전분			
1108	19	1000	고구마로 만든 것	4,376톤	20,624톤	25,000톤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10		종자	185,787톤	45,000톤	230,787톤
1201	10	1000	콩나물용			
1201	10	9000	기타			
1201	90		기타			
1201	90	3000	콩나물용			
1201	90	9000	기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테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30		종자	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톤	탈각한 낙화생 기준 5,999.7톤	탈각한 낙화생 기준 10,907톤
1202	30	1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30	2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			

			에 상관없다)			
1202	4		기타			
1202	41	0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42	0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1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	11		땅콩			
2008	11	9000	기타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40	0000	참깨	6,731톤	64,269톤	71,000톤
1214			스워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	900,000톤*	25,000톤	925,000톤

			(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90		기타			
1214	90	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214	90	90	기타			
1214	90	9090	기타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8	00	9000	기타			
2309			사료용 조제품	11,000톤*	84,490톤	95,490톤
2309	90		기타			
2309	90	20	보조사료			

2309	90	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2309	90	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2309	90	209	기타			
2309	90	2099	기타			
2309	90	90	기타			
2309	90	9090	기타			

주) 2023년 시장접근물량의 현행 물량 중 “*” 표시된 물량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한계수량을 말한다.